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-714호

# 2026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(ODA) 하반기 사전타당성조사 2차 공고

「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(산업부 예규)」에 의거, ‘26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(ODA;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) 하반기 사전타당성조사 2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본 공고문과 첨부 양식*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 11. 23.

산업통상부 장관

* 양식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(http://kotra.or.kr)의 "사업신청" 참조

## Ⅰ 사업 개요

### 1 사업 목적

○ 산업통상부는 개도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강점 분야인 제조업 등 산업 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
○ 본 공고는 2028년 이후 착수되는 신규 프로젝트 기획·발굴에 필요한 N-2년(사업 착수 2년 전) 사전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·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것임

## 2 추진 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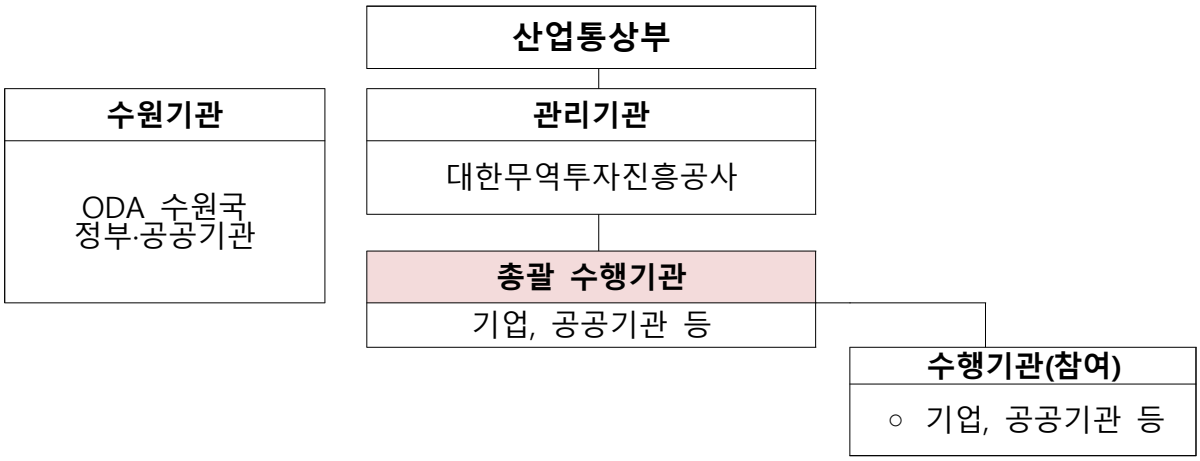


- ㅇ 시행부처 : 산업통상부
- ㅇ 관리기관 :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사업 위탁집행 및 관리)
- ㅇ 수원기관 : ODA 수원국 정부·공공기관
- ㅇ 수행기관 : 기업, 공공기관, 업종별 협·단체, 대학, 연구소 등

## 3 지원 기간 및 규모

ㅇ 지원 내용 : 신규 프로젝트 사전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

ㅇ 지원 규모 : 각 과제 당 70-90백만원 내외

* 아프리카·중남미 지역 85백만원, 그 외 지역 75백만원

ㅇ 지원 대상 : 국내 기업·기관, NGO 등

ㅇ 수행 기간 : 과제 선정·협약체결 시 ~ 2027년 3월 31일

ㅇ 선정 과제 : 3개 내외

**<신규사업 추진 절차 >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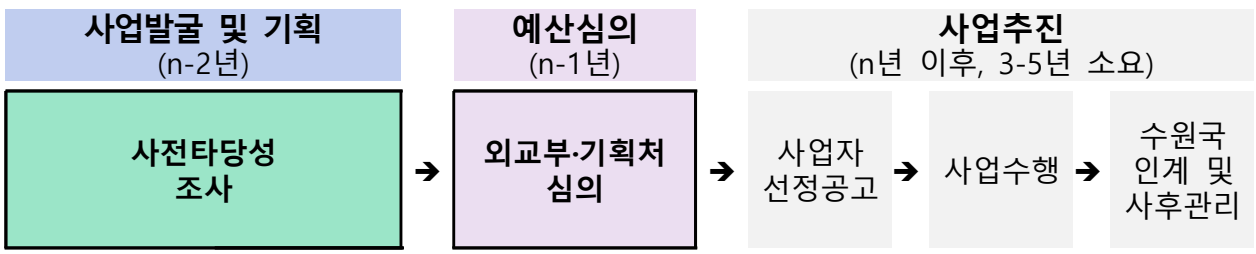

## 4 추진 절차 및 일정

| 절 차 | | 내 용 | 비 고 | 일 정 |
|---|---|---|---|---|
| ① | 공모 | **<사업 공고>** | 산업통상부 | '26.11.23.<br>~ 12.14. |
| ② | 신청·접수 | **<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>**<br>•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| 총괄 수행기관→<br>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| ~ '26.12.14. |
| ③ | 선정평가 | **<선정 평가>**<br>•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→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부처 확정 → 최종선발 과제 안내 | 산업통상부<br>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| '26.12월 |
| ④ | 협약체결 | **<협약체결>**<br>• 사업계획서 검토·확정 → 협약체결 |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<br>↔<br>수행기관(총괄·참여) | '26.12월 |
| ⑤ | 과제 수행 | **<과제수행>**<br>• 사전타당성조사 수행 | 수행기관(총괄·참여) | '26.12월~<br>'27.2월 |
| ⑥ | 결과보고 | **<결과보고>**<br>•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| 수행기관(총괄) →<br>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| ~'27.2월 |
| ⑦ | 사업비 정산 | **<사업비 정산>**<br>•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<br>→ 관리기관 정산(회계법인 위탁) | 수행기관(총괄) →<br>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| ~ '27.3월 |
| ⑧ | 평가 | **<평가>**<br>• 관리기관(평가위원회) 평가 및 보고 |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<br>→<br>산업통상부 | ~ '27.3월 |

* 본 일정은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

## 5 관련 법령 및 규정

○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
○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
○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 운영요령

*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위의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용

## II 지원 내용

### 1 지원 개요

○ **(지원 유형)** 정상외교 의제, 연계 MOU 등을 통해 발굴된 개발협력 과제 대상 프로젝트 모델설계 및 타당성 조사 계획 지정 공모

○ **(지원 내용)** 신규 프로젝트 기획·사전타당성조사 수행 비용

○ **(지원 과제)** 개도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 목적의 과제로서 우리 산업·기업의 수출·해외진출 지원과 연계할 수 있는 과제

### 2 지원 과제

○ 핵심광물, 할랄인증, 조선, 제조AI 4개 분야 **총 3건 내외 과제 선정**

**<지원 분야 및 과제 내역(붙임1 참조)>**

| 분야 | 과제 내용 | 주요과업(참고) |
|---|---|---|
| **핵심광물** | 핵심광물 탐사·개발 및 재자원화 역량강화, 공급망 협력기반 구축 사업 | 핵심광물 탐사·개발, 폐배터리·폐가전·광물찌꺼기 재자원화·기술실증 지질정보DB화, 시험분석, 관련 인프라 구축 |
| **조선** | 조선 기자재 공급망 고도화 및 친환경 선박 전환 역량강화 사업 | 수원국 조선 기자재 밸류체인 실태조사, 친환경 조선 기자재 및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, 품질 및 표준 인증 역량 강화 |
| **제조AI** | 제조 AI 기반 생산공정 혁신 및 산업인력 양성 기반 구축 사업 | AI적용 공정 실증·실습 인프라 구축, 인력육성 및 시스템 운영 마스터플랜, 스마트 제조전환을 위한 데이터 구축, 역량 강화 |
| **할랄인증** | 할랄 시험·인증 인프라 및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사업 | 할랄 시험 실험실 장비 구축, 디지털 운영체계 및 관리자 역량강화 |

## 3 과제 공통 과업 범위

○ 신규 프로젝트 기획 및 사전타당성조사 수행

- 수원국 및 재외공관(최소 2회 방문)과 협력하여 관계자 협의(월 2회 이상)
- 현지 출장(최소 3회)을 통한 관련 데이터수집 및 기초선 조사
- 프로젝트 세부 추진계획, 소요 예산 상세 내역을 도출하고,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량적·정성적 타당성 분석
-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, PCP 초안작성 및 수원국 접수 지원, 환경사회영향평가 설문지, 환경사회영향평가 및 조치계획(필요시) 등 과제 결과물 생산·제출

○ 사전타당성조사 과제 결과물을 수원국 이해관계자에 공유

○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요건* 마련 및 확보 지원 추진

* 수원요청서 확보, 협의의사록(RoD) 초안 작성, 무상 지원 기자재 통관·면세 사전협의

## 4 지원 대상 (신청자격)

○ 각 과제 해당 분야에 전문성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관 (기업, 대학, 연구소, 협·단체 등)

○ 총괄수행기관 단독 지원 또는 '기업, 협·단체, 공공기관, 연구기관'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

## 5 지원 기준

### 가. 사업비 산정

○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비와 자기부담금으로 구성되며, 자기부담금은 필수는 아니나 과제의 특성에 따라 자기부담금 산정할 수 있음

○ 세부 사업비 산정, 사용, 정산은 「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(산업부 예규)」 및 동 요령 [별표2] 사업비의 사용 용도 및 세부 산정 기준을 따름

○ 사업비 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회계 정산 또는 상시 점검 등을 통해 불인정 회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여 사업비 산정 및 사용 필요

○ 사업비는 협약체결 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(RCMS)을 통해서 지급하며, 수행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(RCMS)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, 관리, 정산해야 함

**나. 협약체결 및 과제 수행**

○ 협약체결은 관리기관-총괄기관-참여기관이 체결하며, 협약체결 및 과제 관리·수행은 수기로 진행

**다. 수행기관 교육 및 수원국 현지 조사**

○ 과제 수행기관(총괄책임자)은 관리기관이 실시하는 수행기관 역량 강화 교육 및 과제수행 검토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하며, 과제수행 기간 중 수원국 현지 조사를 최소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

**라. 성과물의 귀속**

○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, 「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(산업부 예규)」에 따라 동 사업의 과제수행을 통해 생산된 보고서, 통계자료 등 성과물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의 소유로 함

**마. 기술료 징수**

○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2조 및 「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」 제4조제2항에 따라 동 사업은 수행기관에서 성과물의

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, 성과물에 대해 공개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 기술료 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**바.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**

○ 동 사업의 과제는 기획 및 사전타당성조사 과제이므로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하지 않음

*「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」 제38조(사후관리), 제39조(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)

## 6 지원 제외 처리 기준

○ 관리기관은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신청기관(총괄 및 참여기관)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○ 관리기관은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대면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며, 「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」 [별표 1] 사전검토 및 평가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함

○「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」 제15조제2항에 따라 동 사업은 사전조사, 기획 및 평가연구 등에 관한 과제에 해당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협력개발지원사업의 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

# Ⅲ 평가 절차 및 기준

## 1 평가 절차 및 방법

○ 평가 절차




* 상기 절차는 선정평가계획(안)에 따라 조정 가능

○ 관리기관은 「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」 [별표1]에 따라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며, 신청기관은 사전검토를 위한 관리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

○ 평가위원은 ODA 전문가 및 산업기술전문가를 섭외하여 위촉하며,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신청기관은 평가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요청 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
## 2 평가지표 및 기준

○ 평가지표 : 선정평가는 아래의 평가지표에 따라 실시

**< 평가지표 및 기준 >**

| 평가지표 | | 평가 기준 | 배점 |
|---|---|---|---|
| 전략성 (70) | 국가 전략 부합성 (10) | ■ 우리나라 국가 전략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사업인가? | 10 |
| | 시장 진출 매력도 및 확장 가능성 (15) | ■ 관련 산업에 대한 사업 대상 지역의 시장 형성 정도 및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가?<br>■ 사업 대상 제품·기술의 수준이 해당 지역 진출·확장에 적정하고 경쟁력이 있는가?<br>■ 사업 대상 제품·기술의 산업적 생태계가 국내에 형성되어 있는가? | 15 |
| | 진출·확장의 당위성 (15) | ■ 기존 민간투자 및 상업 금융 등으로 해소되지 않은 애로 사항이 ODA 연계를 통해 해소되는가?<br>■ 제안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·투자 확대 구조 창출 또는 ESG·현지 채용 등 KPI 달성이 가능한가?<br>■ 사업 희망국 내 수입제한, 규제 등 각종 진입 장벽을 고려했을 때 우리 기업 진출·확장이 적합한 시장인가? | 15 |
| | 진출·확장 계획의 구체성 (20) | ■ 시장조사 및 규격·인증 획득 등 대상 지역 시장 진출·확장을 위한 우리 기업의 준비 계획이 체계적인가?<br>■ 동 사업과 연계한 민간 자금 조달, 후속 투자 연계가 가능한 구조로 사업이 설계되었는가? | 20 |
| | 수행기관 역량 (10) | ■ 제안 기관의 신흥국 수출·수주·진출 관련 역량이 높은가?<br>■ 제안 기관·총괄책임자의 수원국 이해도가 높은가?<br>■ 제안 기관·총괄책임자의 수원국 네트워크가 충분한가? | 10 |
| ODA 추진 적정성 (30) | 수원국 수요 매칭 가능성 (10) | ■ 수원국 파트너의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가?<br>■ 수원국 개발전략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인가? | 10 |
| | 프로젝트 모델 체계성 (15) | ■ 수원국 환경 및 대안이 적절히 분석되었는가?<br>■ 제안한 단계별 사업 논리가 체계적이고 달성 가능한가?<br>■ 수원환경 및 이해관계자 우선순위를 적절히 고려했는가? | 15 |
| | 프로젝트 모델의 지속가능성 (5) | ■ 사업 수행 및 성과 지속 저해 요인 대응책이 적절한가?<br>■ 종료 후 수원국 측의 자립적 운영이 가능한가? | 5 |
| **총점** | | | **100** |

* 상기 평가지표 및 배점, 항목은 추후 조정 가능

○ **(우대사항)** 대외경제협력기금(EDCF), 공급망안정화기금, 수출·개발금융 등 타 정책 금융과 연계 계획을 제안*하는 경우 등 가점 최대 3점 부여

* 유·무상원조 및 타 재원의 연계 대상 사업의 존재에 대한 공식적 증빙 제출 필수

### 3 유의사항

○ 개도국에 지원되는 기자재는 국산 또는 국내기업이 제조한 장비를 우선 조달·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신규사업 기획을 권고함

○ 다음의 경우에는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- 공고 분야별 해당 조사 항목에 대해 작성되지 않은 경우
- 공고된 사업계획서 양식(첨부)으로 작성·제출하지 않은 경우
- 제안하는 기관장의 직인이 누락된 경우
- 공적개발원조(ODA)의 기본 방침,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
## Ⅳ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### 1 신청 방법

○ 양식교부 :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(www.kotra.or.kr) 내 사업신청 페이지 참조

○ 신청방법 :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, 온라인 접수 **(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)**

○ 신청 서류 제출 : ‘26년 12월 14일(월) 자정 (전산접수 완료 기준)

○ 문의 : KOTRA 개발협력실(oda@kotra.or.kr)

## ㅇ 접수 유의사항

**< KOTRA 홈페이지 접속 → 통합회원가입 → 온라인 접수 >**

① 통합회원가입 : 총괄 수행기관 및 참여 수행기관이 관리기관 홈페이지(www.kotra.or.kr)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,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가입(1-2영업일 소요)

② 온라인 접수 :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, 신청 접수시 총괄 수행기관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

③ 파일 업로드 :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하여 업로드하는 것으로,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OTRA 사업신청페이지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

*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완료 및 제출 요망. 또한, **안내된 전산접수 마감일 시각 이후 전산접수 불가(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불가)**
* 전산등록 시에는 총괄 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(회원가입 필요)
*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-mail 및 휴대폰 번호를 통해 진행 일정 등이 안내되므로, 정확한 연락처 입력 必
*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
*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, 위.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,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
* 구비서류 미비 시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, 보완 미비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* **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**

## 2 제출 서류

1. 사업계획서 1부
 * 수원국의 추진 의사 증빙자료(LOI 등)은 필수제출 사항은 아니며, 제출시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
2.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
3.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
4.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
5. 과제수행 윤리·청렴·인권 및 보안서약서
6. 총괄책임자의 재직증명서
7. 수행기관(총괄 및 참여기관)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(기관별 제출)
8. 수행기관(기업만 해당)의 최근 2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

※ 온라인상 제출 서류 일부 누락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

## V 문의처

○ 공고·사업 문의

| 구분 | 담당자 문의처 |
|---|---|
| 공고·사업 문의 | KOTRA 개발협력실 oda@kotra.or.kr |
| 온라인 접수 문의 | KOTRA 고객센터 1600-7119 |

**[붙임]**

1. 지정공고 과제별 상세내용
2. 사업계획서 양식
3.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
4.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
5.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제공활용 동의서
6. 과제 수행 윤리・청렴・인권 및 보안서약서
7. ODA 수원국 목록
8. 산업기술분류표

/끝/

[붙임 1] 지정공고 과제별 상세내용

*이외 붙임자료는 KOTRA 사업신청페이지(kotra.or.kr)에서 확인

## 1 핵심광물 탐사·개발, 재자원화 역량강화 및 공급망 협력기반 구축

### □ 추진배경 및 목적

- ㅇ **(추진배경)** 개도국은 부존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제 발전 및 복지 증진을, 한국은 핵심광물 탐사·개발, 재자원화 기술협력을 통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도모
- ㅇ **(목적)** 핵심광물 탐사·개발 및 재자원화·시험분석 역량 구축을 통한 수원국 고부가가치화 지원 및 한국-수원국 공급망 협력관계 형성

### □ 사업내용 (예시)

- ㅇ **(데이터化)** 자원·2차자원 조사·분석, 지질·광물자원 지질정보시스템(GIS) 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이와 연계된 기업 투자정보 플랫폼 구축
- ㅇ **(실증)** 핵심광물 선광, 정·제련, 광물찌꺼기 감량·농축, 폐가전 및 폐배터리 회수 등 파일럿 실증
- ㅇ **(인프라 구축)** 자원 시험분석센터 구축 또는 현대화
- ㅇ **(제도)** 기술평가 지침, 환경영향평가 관리 가이드라인 구축
- ㅇ **(역량강화)** 시험분석센터 운영인력 OJT, 투자 연계 지원 및 방한연수

### □ 기대효과

- ㅇ **(한국측)** 핵심광물 관련 데이터 확보, 국내 산업 공급망과 연계 및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 마련
- ㅇ **(수원국측)** 재자원화를 통한 투자 유치·세수 확보, 광해·환경 부담 저감

## 2 조선 기자재 공급망 고도화 및 친환경 선박 전환 역량강화 사업

### □ 추진배경 및 목적

- o **(추진배경)** IMO 탄소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 개조 수요 확대 속, 개도국은 조선 산업기반 부족으로 친환경 전환과 공급망 운영에 한계
- o **(목적)** 수원국 조선 기자재 산업 고도화 및 고용 창출 지원과 함께 우리 기자재 기업의 진출·공급 기반 및 기술 파트너십 형성

### □ 사업내용 (예시)

- o **(조사)** 수원국 조선 기자재 산업 밸류체인 실태 조사
- o **(인프라·기자재 구축)** 조선 기자재 성능시험·품질검증 장비(비파괴검사·정밀계측·소재물성 분석), 친환경 연료 설계·시운전 시뮬레이터 및 실습설비(국산 기자재 우선) 구축
- o **(역량강화)** 조선·기자재 엔지니어 및 품질관리 담당자 교육, 방한연수
- o **(제도)** 시험인증 절차, 품질경영(ISO)·기자재 규격 표준화 지원
- o **(기업연계)** 한-수원국 소부장 기술 파트너십 매칭, 공동 조달·기술제휴

### □ 기대효과

- o **(한국측)** 우리 기자재에 대한 현지 이해도 제고, 표준·인증 연계로 진입장벽 완화로 신규 시장 교두보 확보 및 후속사업 수주경쟁력 제고
- o **(수원국측)** 친환경 선박 건조·개조 역량 확보 및 조선산업 고도화, 조선 기자재 품질 경쟁력 및 글로벌 규격 부합성 확보

## 3 제조 AI 기반 생산공정 혁신 및 산업인력 양성 기반 구축 사업

### □ 추진배경 및 목적

- **(추진배경)** 개도국은 제조업 육성 및 현대화, 부품 현지화 추진에도 공정기술 및 숙련인력 부족으로 생산고도화에 제약
- **(목적)** 우리나라의 AI·스마트공장 보급 경험 교육·실증 거점 구축 통해 수원국 생산 고도화 및 우리 AI·스마트 제조 솔루션·장비기업 진출, 향후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 연계

### □ 사업내용 (예시)

- **(실증·교육인프라)** AI 용접·금형·가공 실습장비, 센서·카메라·생산관리 시스템 도입(국산 기자재·솔루션 우선)
- **(마스터플랜)** 진출기업·현지 기업의 인력·공정 수요 조사, 우선 분야 및 장비·교육과정 구축계획 마련
- **(역량강화)** 장비 실습·품질검사·숙련도 평가를 통한 현장 투입 인력 양성
- **(직무인증·확산)** 직무능력 평가·인증체계 구축

### □ 기대효과

- **(한국측)** 개도국 제조현장의 실증 레퍼런스 확보 및 제조 AI 솔루션·장비의 수출 기반 마련, 국내 확보 어려운 작업데이터의 협력체계 구축
- **(수원국측)** 생산공정 스마트화를 통한 생산성·품질 역량 제고 및 산업수요에 맞는 숙련인력 양성 및 직무 인증체계 확보

## 4 할랄 시험·인증 인프라 및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사업

### □ 추진배경 및 목적

- **(추진배경)** 무슬림 인구비중이 높은 수원국의 경우 할랄 시험 인프라, 인증 운영체계, 디지털 관리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할랄 제품의 신뢰성 확보, 인증 투명성 제고 및 이슬람권 시장 진출에 한계
- **(목적)** 수원국 할랄 시험·인증 인프라 및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및 우리 기업의 인증 비용·기간 부담 및 진입 장벽 완화

### □ 사업내용 (예시)

- **(인프라 구축)** 할랄 시험 실험실 및 분석장비(DNA·에탄올 등) 구축, ISO/IEC 17025 기반 시험소 운영체계·절차서 마련(국산 기자재 우선)
- **(디지털 관리체계)** 인증 신청·심사·시험성적서·인증서 발급·갱신·사후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
- **(역량 개발)** 심사원, 시험분석원, 시스템 관리자, 기업 실무자 교육훈련
- **(제도·협력)** 할랄 인증 MRA 추진 로드맵 수립

### □ 기대효과

- **(한국측)** 할랄 MRA 추진 기반 확보 및 국내 식품·화장품 기업의 인증비용·기간 절감
- **(수원국측)** 국가 할랄 시험·인증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할랄 제품의 신뢰성·투명성 제고 및 이슬람권 수출 기반 마련